■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[별지 제14호의2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[] 분할납부
[] 납부연기 결정서

년 징제 호	담당자	집행주무	집행과장

납부 의무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

죄 명	
벌과금 등의 종류	
납부할 금액	
분할납부 금액	
납부 시기 및 방법	
직권결정사유	

취소 연월일	검 사 (서명 또는 인)
취 소 사 유	

「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벌과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(납부연기)를 결정합니다.

년 월 일

공소청(지청)

검 사 ㊞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